



제 432회 국회(임시회)
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윤한홍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4901호)

2026. 2.

재정경제기획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대상 확대	3

I. 개요

1. 윤한홍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2214901호)

가. 제안경위

(1) 제 안 자 : 윤한홍의원 등 10인

(2) 제 안 일 : 2025. 12. 4.

(3) 회 부 일 : 2025. 12. 5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은 창업주의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하여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규정한 「상법」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고 있고,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하여 보통주식을 납입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시점까지 과세이연하도록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.

그런데 미국·일본 등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적대적 인수·합병 등 경영권 공격에 상응하는 방어 수단이 부재한 상황으로, 「상법」 개정을 통하여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한해서라도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임.

이에 현행법에 과세특례 대상에 「상법」의 복수의결권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하여 중요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복수의결권주식제도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(안 제47조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한홍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899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과세특례 대상 확대

현 행	개정안
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(제47조) ○ 대상 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창업주 - <신 설> ○ 과세특례 - 복수의결권주식의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납입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양도소득세 과세 이연	☐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○ 대상 - (현행과 같음) - <u>국가전략기술, 국가핵심기술, 방위산업기술, 국가첨단전략기술 등 보유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자</u> ○ 과세특례 - (현행과 같음)

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등 보유기업에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¹⁾의 의결을 전제로,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에 현행 벤처기업의 창업주 외 국가전략기술 등 보유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자도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.

☐ 현행 「상법」 제369조²⁾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³⁾에 근거하여 주식

1) 윤한홍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48909호

2) 「상법」 제369조(의결권)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.

3) 회사와 주주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모든 주식주는 '주식수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'을 의미함.

1주당 의결권은 1개로 하도록 하고 있고, 이에 대한 예외로 「상법」 제344조의3⁴⁾에서 의결권이 없거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⁵⁾의 발행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1주당 복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근거는 마련하고 있지 않음.

그런데, 최근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 「상법」상 예외를 인정하여 복수의결권주식(Multiple voting shares) 발행근거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였음.⁶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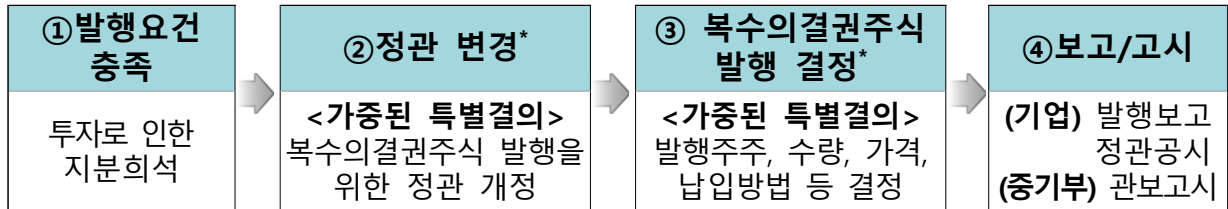
차등의결권주식의 하나인 복수의결권주식이란 「상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의 원칙의 예외로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을 의미하는데,

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에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⁷⁾가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 의결권 하락(30% 미만 또는

-
- 4) 「상법」 제344조의3(의결권의 배제·제한에 관한 종류주식)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,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.
- 5) 「상법」 제344조에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면서 같은 법 제344조의3에서 ‘의결권의 배제·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’만을 규정함.
- 6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[법률 제19416호, 2023.5.16., 일부개정]
제16조의11(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)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「상법」 제369조에도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복수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(이하 “복수의결권주식”이라 한다)을 발행할 수 있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창업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투자를 받았을 것. 이 경우 가장 나중에 받은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.
2. 제1호 후단의 투자를 받음에 따라 제5항에 따른 창업주가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(제6항에 따른 창업주인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하지 아니하게 될 것을 말한다)
- 7)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[법률 제19416호, 2023.5.16., 일부개정]
제16조의11(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) ⑤ 복수의결권주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주(이하 “창업주”라 한다)에게 발행한다.
1.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 「상법」 제289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관에 기재된 발기인일 것
2. 「상법」 제382조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당시 회사의

최대주주 지위 상실)시 최대 10년 한도,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정관변경과 발행 결정에 있어서 가중된 주주 동의(발행주식총수의 3/4)를 얻도록 하고 있음.

[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절차]



* 정관 변경과 발행 결정은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동시에 의결 가능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

이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는 벤처기업의 성장과정에서 필요한 유상증자 등 자본 조달 과정에서 지분 희석에 따른 경영권 위협을 최소화하여, 안정적인 경영권을 바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□ 한편, 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47조8)는 복수의결권 주식의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을 현물출자로 납입한 경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 받을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, 이는 현금흐름

상무(常務)에 종사하는 이사일 것

3. 급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

4.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설립 당시부터 가장 나중의 투자를 받기 전까지 계속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가장 많은 주식을 소유한 자일 것

8) 「조세특례제한법」

제47조(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) ①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1제5항의 창업주(이하 이 조에서 “창업주”라 한다)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복수의결권주식(이하 이 조에서 “복수의결권주식”이라 한다)에 대한 납입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복수의결권주식이 같은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창업주는 복수의결권주식이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6조의12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연받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이 제한적인 벤처기업 창업주의 세부담을 고려한 것임.

□ 개정안은 「상법 일부개정법률안」⁹⁾의 의결을 전제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하여도 복수의결권 주식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, 과세이연 특례를 함께 적용하려는 것으로,

국가전략기술, 국가핵심기술,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이 적대적 기업인수합병(M&A)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가 있음.

□ 다만, 복수의결권 주식은 대주주 지배력 집중을 심화시킬 수 있어 사익추구의 위험을 확대시키고, 희석된 기존주주나 소수주주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등 「상법」상 주주평등의 원리를 훼손하는 측면도 있으므로 이를 국가전략기술 보유기업 등으로 확대 적용할 것 인지에 관한 「상법」 개정안의 논의 경과에 따라 과세이연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음.

문 의 처
02)6788-5150

9) 윤한홍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214899호